

관광진흥법 위반업체(여행업)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

「관광진흥법」 위반업체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

광진구청



1. 공고내용 : 「관광진흥법」 위반 관광사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

2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

가. 공고기간 : 2021.7.30. ~ 2021.8.16.

나. 의견제출처 : 광진구청 문화체육과

다. 의견제출기한 : 2021.8.16.까지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

4. 공시송달대상자

업종	상호	대표자	사업장 소재지	위반내용 (법적근거)	처분 예정 내용
일반여행업	***** 여행	이**	광진구 동일로34길 31, 201호 (군자동)	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, 영업보증금 미예치 (관광진흥법 제9조, 제35조제1항제4호)	사업정지1개월 (행정처분 2차)

5. 기타사항

가.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
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(☎02-450-759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